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②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설계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 없는 수량 증가가 범위반이 되지 않는지 여부

Q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단가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가 범위반이 되지 않는지?

A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기존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공사분에 관하여는 하도급비율이 원도급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2.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의 의미

Q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부당감액금지)의 내용 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위탁을 할 때’ 라는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 ① 입찰 또는 견적을 통해 공사금액을 확정지은 때 인지
 - ②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하는 것인지
- 에 관한 여부

A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하므로 ‘위탁을 할 때’란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의미한다. 다만 경쟁입찰 시 확정(낙찰)된 공사대금보다 현저하

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은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당감액 행위란?

Q '부당감액'이란 어떤 행위인가?

A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가 단기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당해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재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4.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명목 10% 공제 등의 부당함

Q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10% 공제 등은 부당하지 않은지?

A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부당공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와,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가 상기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서면으로 신고하면 조사하여 처리한다.

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Q 하도급공사를 금액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였다. 2개월 정도 공사진행 중 공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 결정부분에서 타협점을 못 찾아 공사를 그만 두었다.

발주처에서 1기준 당 95만원 계약된 사항을 50만원에 시공하라 함은 공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집행이 대단히 힘들고 하도급규정에 하도급요율이 없는지? 아울러 계약자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에서는 원도급금액에 대비 하도급금액의 하도급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그 정해진 하도급을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동 사안에서의 하도급대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동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된다. 또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법정 기재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저가하도급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을 마련(2000. 5. 29.)하여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공사특성 및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Tel: 500-4082~3)로 문의하기 바란다. ☎



A daughter and A daughter in law – 딸과 며느리

“What kind of a boy did your daughter marry?”

“Oh, he’s wonderful. He lets her sleep late, wants to go to the beauty parlor everyday, won’t let her cook and insists on taking her out for dinner every night.”

“That’s nice. And your son, what kind of a girl did he marry?”

“Oh, I’m not so happy there. She is lazy, sleeps late every morning, spends all her time at the beauty parlor, won’t cook and makes him take all their meals out.”

“따님은 어떤 남자한테 시집갔어요?”

“아주 잘 갔어요. 아침 늦게까지 잠자게 하고 미장원엔 날마다 보내며 부엌일은 아예 못하게 하면서 밤마다 외식 이라지 됩니까.”

“다행이군요. 그러면 아드님은 어떤 여자라고 결혼했지요?”

“그쪽이 문제 라구요. 게을러 가지고 아침마다 늦잠이고 미장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부엌일은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남편을 즐라 끼니마다 외식 이라지 됩니까.”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